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 토 보 고

〈충청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산업혁신기금 설치 등〉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9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4  |
| 1. 총괄 검토 .....                        | 4  |
| 가. 제정안의 개관 .....                      | 4  |
| 나.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              | 8  |
| 2. 조문별 검토 .....                       | 12 |
|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8조) .....            | 12 |
| 나. 제2장 운영위원회(안 제9조~제11조) .....        | 19 |
| 다. 제3장 임원과 직원(안 제12조~제19조) .....      | 23 |
| 라. 제4장 업무(안 제20조 및 제21조) .....        | 26 |
| 마. 제5장 재무 및 회계(안 제22조~제28조) .....     | 29 |
| 바. 제6장 충청권산업혁신기금(안 제29조~제34조) .....   | 33 |
| 사. 제7장 보칙 및 제8장 벌칙(안 제35조~제41조) ..... | 42 |
| 아. 부칙 .....                           | 45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8.
3. 회부연월일 : 2025. 4. 2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과학기술 R&D, 공공행정, 첨단 산업 등이 집약되어 고유한 산업구조와 성장잠재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 지역임.

그런데 수도권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인하여 충청권 소재 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의 자금 확보에 불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충청권 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충청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정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장은 충청권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밖에 임원의 직무,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 라.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마.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예산과 결산, 손익금의 처리, 사채의 발행, 여유자금의 운용 등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 바. 충청권의 신산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벤처기업 육성, 산업

구조의 재편, 충청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청권산업투자공사에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안 제29조).

### Ⅲ. 검토의견

#### 1. 총괄 검토

##### 가.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충청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를 통해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사의 업무수행 및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공사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충청권혁신기금 관리·운용 등을 포함한 공사의 업무범위 및 내용, 재무·회계 및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총 8장 41개의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선, 제1장 총칙(안 제1조~제8조)에서는 제정안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공사의 법적 지위 및 자본금, 정관, 등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공사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위

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에서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임면 및 직무,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그 밖의 이사회의 설치, 대리인의 선임, 임직원에게 대한 겸직금지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장에서는 충청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에서는 공사의 예·결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여유자금의 운용 등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6장에서는 충청권의 신산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벤처기업 육성, 산업구조 재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공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조성 및 관리·운용,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7장 보칙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 및 보고·검사 권한과 공사의 경영정보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장 별

칙은 비밀누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부당 이용 등에 대한 벌칙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공사의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설립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1] 제정안 목차

| 장           | 조 문              |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             | 제2조(정의)          |
|             | 제3조(법인)          |
|             | 제4조(사무소)         |
|             | 제5조(자본)          |
|             | 제6조(정관)          |
|             | 제7조(등기)          |
|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 제2장 운영위원회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 제3장 임원과 직원  | 제12조(임원)         |
|             | 제13조(임원의 직무)     |
|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             | 제15조(임원의 신분보장)   |
|             | 제16조(이사회)        |
|             | 제17조(대리인의 선임)    |
|             | 제18조(직원의 임면)     |
|             |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
| 제4장 업무      | 제20조(업무의 범위)     |
|             | 제21조(업무방법서)      |
| 제5장 재무 및 회계 | 제22조(회계연도)       |
|             | 제23조(예산과 결산)     |
|             | 제24조(손익금의 처리)    |
|             | 제25조(사채의 발행)     |
|             | 제26조(차입)         |

| 장                       | 조 문                        |
|-------------------------|----------------------------|
|                         | 제27조(여유자금의 운용)             |
|                         | 제28조(자료 제공의 요청)            |
| 제6장<br>충청권<br>산업혁신기금    | 제29조(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설치)        |
|                         | 제30조(기금의 조성)               |
|                         | 제31조(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 등)    |
|                         |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
|                         | 제33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
|                         | 제34조(기금의 회계)               |
| 제7장 보칙                  | 제35조(감독)                   |
|                         | 제36조(보고·검사 등)              |
|                         | 제37조(공고)                   |
|                         | 제38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
|                         |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제8장 벌칙                  | 제40조(벌칙)                   |
|                         | 제41조(과태료)                  |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2026년 1월 1일 시행 |                            |
| 제2조(공사의 설립 준비)          |                            |
| 제3조(설립 비용)              |                            |

## 나.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지방시대위원회가 2023년 수립·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sup>1)</su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및 취업자의 50.5%(2022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고용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sup>2)</sup>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현황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한편, 금융 측면에서도 자금조달 및 운용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금융수요 대비 공급도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2023년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존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2022)’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통합하여 추진·발표한 종합계획임.

2)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 (생산) 수도권-비수도권 GRDP 격차 확대('10년  $\Delta 1.2\%p$  → '21년  $5.6\%p$ )

○ (고용)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21년 기준)

○ (기업)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22년 기준)

○ (인구)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22년 기준)

자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의 여신 공급(B)에서 금융수요(A)를 차감한 값(B-A)을 기준으로 지역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은 전국에서 금융 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평가된 바 있음.<sup>3)</sup>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기회발전특구<sup>4)</sup>를 최초 지정한 이후,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같은 해 11월 추가 지정함으로써 지방시대 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지방세, 상속세 등의 세

---

3) II. 연구용역 결과 발췌

1. 분석 방법론

- ☐ 다만, 현재의 분석 방법으로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지역 내 금융수요의 충족 여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 유념할 필요
- 방법론상 (특정 지역 기업금융 수요/전국 기업금융 수요) - (특정 지역 기업여신 공급/전국 기업여신 공급)의 전국 합계는 0이 됨

2. 분석결과

- ☐ GRDP를 지역 금융수요로 보았을 때 예금취급기관 전체의 지역별 금융수요(A)·공급(B)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B-A=14.6)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금융수요보다 금융공급이 더 많은 정도가 가장 큰 지역임
  - 서울을 뺀 수도권(인천·경기, B-A=-5.1)과 비수도권(B-A=-9.6)은 모두 금융수요에 비해 금융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공급의 서울편중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비수도권에서는 금융수요 대비 공급이 수도권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의 (B-A)는 -5.4로, 전국에서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소기업대출·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와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을 평가하였습니다.”, 2024. 11. 6., 별첨3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 평가 결과보고서」

- 4)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제 지원과 보조금, 규제특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정안은 대전의 연구개발단지, 충북의 바이오헬스, 충남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세종의 스마트시티 등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충청권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청권 산업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지역 거점 기반의 특화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는 내용

의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제2210650호)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상황임.

## 2. 조문별 검토

###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8조)

#### 1)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이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과 충청권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고,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충청권” 및 “금융회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음.

| 제정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충청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충청권”이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                                                                                |
| 2. “금융회사”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청권 산업육성을 위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 2) 법인의 설립 및 등기 등에 관한 사항

| 제정안                                                                                                                                                                                                                                                                                                                                                                                                                                                                                                                                                                                                                                                                                                                                                                                                                                                                                                                                                                                                                                                                                                                                                                   |
|-----------------------------------------------------------------------------------------------------------------------------------------------------------------------------------------------------------------------------------------------------------------------------------------------------------------------------------------------------------------------------------------------------------------------------------------------------------------------------------------------------------------------------------------------------------------------------------------------------------------------------------------------------------------------------------------------------------------------------------------------------------------------------------------------------------------------------------------------------------------------------------------------------------------------------------------------------------------------------------------------------------------------------------------------------------------------------------------------------------------------------------------------------------------------|
| <p>제3조(법인)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p> <p>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다.</p> <p>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p> <p>제5조(자본)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한다.</p> <p>② 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li> <li>2. 충청권 지방자치단체</li> <li>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li> <li>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li> <li>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li> </ol> <p>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각 은행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p> <p>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출장소에 관한 사항</li> <li>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li> <li>5.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li> <li>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li> <li>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li> <li>8. 제29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에 관한 사항</li> <li>9. 사채 및 제31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li> <li>10. 회계에 관한 사항</li> <li>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li> <li>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

| 제정안                                                                                                                                                                                                                                                                                                   |
|-------------------------------------------------------------------------------------------------------------------------------------------------------------------------------------------------------------------------------------------------------------------------------------------------------|
| <p>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②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

안 제3조는 공사를 법인으로 두려는 것으로, 충청권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적 기능들을 감안할 때, ‘공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안 제4조는 사무소를 대전광역시로 두고, 필요한 경우 지사나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주된 소재지를 특정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사·출장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안 제5조는 자본금 규모를 3조원으로 하되, 정부, 충청권 지자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설립·운영을 위한 출자구조의 개요를 정하고 있음.

먼저, 자본금 출자 규모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와 유사한 현행 기관인 해양진흥공사의 2023년 말 기준 자본금 규모가 3.13조원<sup>5)</sup>인 점을 고려하면, 충청권이라는 특정 지역의 산업 지원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다만, 공사의 설립 취지 및 역할을 고려할 때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의 경영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 제1조가 충청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충청권 지역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공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공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등 출자주체 간 지분비율에 따른 경영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 및 충청권 지자체, 그 외 금융회사(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간 지분의 최소 확보 비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sup>6)</sup>

5)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규모(2023년도 기준): 정부 1조 5,923억원(50.8%), 공공기관 1조 3,040억원(41.6%), 민간 2,376억원(7.6%)

6) <비교 입법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 의결 시, 안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 부칙에 따른 ‘공사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출자주체별 출자규모 추계 및 계획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음.

안 제6조는 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중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운영 효율성,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확보하고 있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는 각각 충청권산업혁신기금에 관한 사항,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사의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sup>7)</sup>,

정부 및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등으로 조성되는 충청권산업혁신기금과 해당 기금의 주요 조성 재원 중 하나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적 자금의 재정통

---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⑤ ~ ⑧ < 생략 >

7) 안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기금의 조성 재원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 공사의 자원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열어두고 있고,

안 제31조제3항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음.

제 및 건전성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및창업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같은 법 제66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발행(같은 법 제65조)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0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나열하면서 기금의 관리·운용 및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sup>8)</sup>

이와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관에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

8) <비교 입법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정관)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9)</sup>

안 제7조는 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육성·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경우,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중요한 영업비밀 등을 취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9) <비교 입법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나. 제2장 운영위원회(안 제9조~제11조)

| 제정안                                                                                                                                                                                                                                                                                                                                                                                                                                                                                                                                                                                                                                                                                                                                                                                                                                                                                                                                                                                                                                                                                                                                                                                                                                                                                                          |
|--------------------------------------------------------------------------------------------------------------------------------------------------------------------------------------------------------------------------------------------------------------------------------------------------------------------------------------------------------------------------------------------------------------------------------------------------------------------------------------------------------------------------------------------------------------------------------------------------------------------------------------------------------------------------------------------------------------------------------------------------------------------------------------------------------------------------------------------------------------------------------------------------------------------------------------------------------------------------------------------------------------------------------------------------------------------------------------------------------------------------------------------------------------------------------------------------------------------------------------------------------------------------------------------------------------|
| <p>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li> <li>2. 공사의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li> <li>3. 정관의 변경</li> <li>4.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li> <li>5.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li> <li>6. 제29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li> <li>7. 그 밖에 공사 및 제29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li> </ol>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의 사장</li> <li>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li> <li>3.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li> <li>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li> <li>5. 충청권 지역금융 및 충청권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충청권에 소재한 사무소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라.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li> </ol> </li> </ol> <p>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p> |

## 제정안

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는 공사의 정책, 예산편성,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의 핵심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안 제9조제2항제6호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권산업혁신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및 충청권 지자체의 출연금과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에 대하여 공사의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적인 지역 금융지원 체계 수립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의 책임성 및 관리·감독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하여 기금의 공적인 성격, 재정운용의 탄력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같은 공적 기금으로 운영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1조제3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안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제1항제3

호에 각 지자체별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자격으로 임명된 위원의 경우 ‘규정된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률에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10)</sup>

---

10) <비교 입법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⑥ < 생 략 >

## 다. 제3장 임원과 직원(안 제12조~제19조)

| 제정안                                                                                                                                                                                                                                                                                                                                                                                                                                                                                                                                                                                                                                                                                                                                                                                                                                                                                                                                                                                                                                                                                                                                                                                                                                             |
|-------------------------------------------------------------------------------------------------------------------------------------------------------------------------------------------------------------------------------------------------------------------------------------------------------------------------------------------------------------------------------------------------------------------------------------------------------------------------------------------------------------------------------------------------------------------------------------------------------------------------------------------------------------------------------------------------------------------------------------------------------------------------------------------------------------------------------------------------------------------------------------------------------------------------------------------------------------------------------------------------------------------------------------------------------------------------------------------------------------------------------------------------------------------------------------------------------------------------------------------------|
| <p>제12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을 두고, 부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p> <p>② 사장은 충청권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③ 부사와장은 이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p> <p>④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p> <p>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ol> <p>제15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li> <li>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li> <li>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li> </ol> <p>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p> |

### 제정안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가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안 제12조는 임원을 사장·부사장·이사·감사로 구성하고, 임원의 임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원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임원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11)에 따라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② ~ ⑤ < 생략 >

2년으로 적용되므로, 향후 충청권산업투자공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충돌을 대비하여, 제정안에 3년으로 규정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임원의 직무,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이사회 구성·의결, 대리인의 선임, 직원의 임면 및 겸직금지, 비밀유지, 재산취득 금지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와 임·직원의 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2조는 기관장의 임기를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개별 공공기관의 관련 근거 법률에 유사한 내용들이 있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라. 제4장 업무(안 제20조 및 제21조)

| 제정안                                                                                                                                                                                                                                                                                                                                                                                                                                                                                                                                                                                                                                                                    |
|------------------------------------------------------------------------------------------------------------------------------------------------------------------------------------------------------------------------------------------------------------------------------------------------------------------------------------------------------------------------------------------------------------------------------------------------------------------------------------------------------------------------------------------------------------------------------------------------------------------------------------------------------------------------|
| <p>제20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청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li> <li>2. 충청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li> <li>3. 국가 또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li> <li>4.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29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li> <li>나.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투자·융자</li> </ol> </li> <li>5. 그 밖에 충청권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업무</li> </ol> <p>②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한다.</p> <p>제21조(업무방법서) 공사는 제20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공사의 역할 및 업무 범위를 충청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충청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정부 수탁사업 수행,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제20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제2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공사의 역할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

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사의 업무수행이 충청권 산업 개발 및 고용 촉진,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라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0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부대업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sup>12)</sup>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명시된 주된 업무에 딸린 부대업무를 주관 부처의 승인으로 공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상의 재량 및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안 제20조제1항제5호는 제정안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충청권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업무’를 공사의 업무 수행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사의 운영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음.

또한,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위원 11인 중 당연직 4인을 충청권 지자

---

12) <비교 입법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 생 략 >

②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③ ~ ⑧ < 생 략 >

체별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하는 등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권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부대업무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내용, 적정 범위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규정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방안<sup>13)</sup>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조<sup>14)</sup>의 목적 규정에서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을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업무범위에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13) <비교 입법례>

「한국투자공사법」

제29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제1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제1조(목적) 이 법은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충청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촉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마. 제5장 재무 및 회계(안 제22조~제28조)

| 제정안                                                                                                                                                                                                                                                                                                                                                                                                                                                 |
|-----------------------------------------------------------------------------------------------------------------------------------------------------------------------------------------------------------------------------------------------------------------------------------------------------------------------------------------------------------------------------------------------------------------------------------------------------|
| 제2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제23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br>1. 이월손실금의 보전<br>2.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br>3.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br>4. 주주에 대한 배당<br>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br>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또는 제29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br>④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제25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br>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br>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 제26조(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 제27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 제정안                                                                                                                                                                                                                                                                                                                                                  |
|------------------------------------------------------------------------------------------------------------------------------------------------------------------------------------------------------------------------------------------------------------------------------------------------------------------------------------------------------|
| 1. 국채·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br>2.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의 예치<br>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br>제28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br>③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삭제하여야 한다. |

먼저, 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예산·결산, 사채 발행, 차입 등 공사의 재무 및 회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규정을 통해 재무 및 회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립금, 사채, 차입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3조는 공사의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예산 및 결산의 작성·처리기한과 예산 작성에 사실상 필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sup>15)</sup> 등을 참고하여 예산,

15) <비교 입법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

업무계획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으로,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28조는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확보 근거 마련 및 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20조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① 국가 또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② 충청권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③ 부대업무를 모두 공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 제28조가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탁사업자인 공사가 위탁 주체인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갖게 되어 업무 위·수탁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안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사 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비로소 확정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가 및 지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 등이 자료요청에 응답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업무 등 주요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권한이 남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유사 입법례<sup>16)</sup>를 참고하여, 공사의 업무 중에서도 충청권 산업발전 및 주된 목적의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보이는 업무에 한정하여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자료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사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과 자료 내용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타 기관의 자료 제

---

16) <비교 입법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에 딸린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⑤ < 생 략 >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4.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의무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동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바. 제6장 충청권산업혁신기금(안 제29조~제34조)

| 제정안                                                                                                                                                                                                                                                                                                                                        |
|--------------------------------------------------------------------------------------------------------------------------------------------------------------------------------------------------------------------------------------------------------------------------------------------------------------------------------------------|
| 제29조(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설치) 충청권의 신산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벤처기업 육성, 산업구조의 재편, 충청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사에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
| 제3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br>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br>2. 정부의 출연금<br>3.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br>4. 금융회사의 출연금<br>5. 제31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br>6.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br>7.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br>8.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br>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 제31조(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br>②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③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br>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br>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 제정안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충청권 소재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2. 채권의 원리금 상환

3. 제30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관리·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3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經理)하여야 한다.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충청권의 지역 산업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사에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조성 수단으로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정부 및 충청권

지자체의 출연금, 금융회사의 출연금,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

이어서 안 제31조는 공사로 하여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32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공사로 정하고, 사용 용도 및 여유자금 운용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33조 및 제34조는 기금의 재정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종료 이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회계와 공사의 회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정안의 규정은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설치를 통해 지역산업 혁신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조성 수단 중 하나로 정부의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고, 안 제31조제5항에 따라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경우 충청권산업혁신기금 운용에 따라 국가재정의 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 보증이 추가로 제공될 경우 보증채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국가재정법」 제5조<sup>17)</sup>는 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탄력성 확보를 위하여 세입·세출 외 예산운용을 인정하면서도, 재정통제를 위한 입법적인 고려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조에 근거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충청권산업혁신기금과 유사하게,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여 별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만큼, 기금운용계획에 대

---

17)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해서는 그 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표 2] 개별 법률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 및 운용현황 비교

| 구분                           | 중소벤처기업 및<br>창업진흥기금                                                      | 기간산업안정기금                                          | 부실채권정리<br>기금                                             |
|------------------------------|-------------------------------------------------------------------------|---------------------------------------------------|----------------------------------------------------------|
| 근거법률                         | 「중소기업 진흥에<br>관한 법률」 제63조                                                | 「한국산업은행법」<br>제29조의2                               | 「한국자산관리공사<br>설립 등에 관한<br>법률」 제38조                        |
| 재원조성                         | -정부 및 지자체 출연<br>금 및 융자금<br>-한국은행으로부터의<br>차입금<br>-중소벤처기업진흥채<br>권 발행 자금 등 | -정부, 한국은행으로부<br>터의 차입금<br>-기간산업안정기금채<br>권 발행 자금 등 | -정부의 출연금<br>-한국은행으로부터의<br>차입금<br>-부실채권정리기금채<br>권 발행 자금 등 |
| 정부의<br>원리금<br>상환 보증<br>적용 여부 | 보증제공                                                                    | 보증제공                                              | 보증제공                                                     |
| 「국가<br>재정법」<br>근거 여부         | 근거 있음                                                                   | 없음                                                | 없음                                                       |
| 기금의 회계<br>결산주체               | 국가회계                                                                    | 한국산업은행 내<br>구분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내<br>구분회계                                       |
| 관리운용<br>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산업은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기금운용<br>계획                   | 국회 의결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br>심의회 의결                              | 공사 내 운영위원회의<br>의결로 확정                                    |

이를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기금 설치 목적, 탄력적 운용 필요성, 적정 수준의 재정통제 절차 및 수

단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회계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례와 같이 개별 법률에 따라 공사 내 구분회계에 설치되는 자금으로 운용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채의 발행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제공될 수 있는만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안 제32조제2항은 기금의 관리·운용 용도와 관련하여, 충청권 소재의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신용공여, 사채의 인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융 지원 수단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금융지원 수단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제정안과 유사하게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등의 금융지원 수단이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수단으로 같은 법 제29조의4에서 자금 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수단에 허용된 재량에 대한 통제 수단을 함께 마련하고 있음.<sup>18)</sup>

또한, 충청권산업혁신기금과 유사한 다른 기금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기금의 사용 용도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별로 명시하고, 그 외 기금의 운영·관리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sup>19)</sup>

18) <비교 입법례>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가. 자금의 대출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인수
  -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 5. < 생 략 >

③ ~ ⑥ < 생 략 >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 4. < 생 략 >

19) <비교 입법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 26. < 생 략 >

이를 감안할 때, 안 제32조제2항과 같이 기금의 관리·운용 용도와 관련하여 충청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대상 및 사업방식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입법할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와 관련한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31조제3항은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핵심 재원 중 하나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 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사 내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sup>20)</su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sup>21)</sup>,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

---

② 삭제 <2008. 12. 19.>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영·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리기금채권<sup>22)</sup>이 모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제정안도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시행령에 해당 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65조(채권의 발행)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 제7장 보칙 및 제8장 벌칙(안 제35조~제41조)

| 제정안                                                                                                                                                                                                                                                                                                                                                                                                                                                                                                                                                                                                                                                                                                                                                                                                                                                                                                                                                                                                                                                                                                                                                                                                                                     |
|-----------------------------------------------------------------------------------------------------------------------------------------------------------------------------------------------------------------------------------------------------------------------------------------------------------------------------------------------------------------------------------------------------------------------------------------------------------------------------------------------------------------------------------------------------------------------------------------------------------------------------------------------------------------------------------------------------------------------------------------------------------------------------------------------------------------------------------------------------------------------------------------------------------------------------------------------------------------------------------------------------------------------------------------------------------------------------------------------------------------------------------------------------------------------------------------------------------------------------------------|
| <p>제35조(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6조(보고·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제37조(공고) 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li> <li>2. 회계감사보고서</li> <li>3. 위원회가 의결한 기금운용계획</li> </ol> <p>제38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① 공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과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40조(벌칙) 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p> |

| 제정안                                                                                                                                                                                                                                                                                                                          |
|------------------------------------------------------------------------------------------------------------------------------------------------------------------------------------------------------------------------------------------------------------------------------------------------------------------------------|
| <p>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를 위반하여 충남권산업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li> <li>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

먼저, 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제7장 보칙)는 공사에 대한 감독 및 보고·검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 공시 및 비공개에 관한 사항, 공사의 임직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감독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취지는 안 제37조에 따른 공고 대상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열거된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중 제7호에 해당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기보다는 원칙적 공개·예외적 비공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40조 및 제41조는 비밀누설, 명칭오용, 영리업무 등 위반 시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다만, 안 제28조에 따라 공사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동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당 자료에 대한 제3자 제공 금지의무를 유사 입법례<sup>23)</sup>를 참고하여 부과하고, 의무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3) <비교 입법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4.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사람

## 아. 부칙

| 제정안                                                                                                                                                                                                                                                                                                                                                                                                                                                                                                                                                                             |
|---------------------------------------------------------------------------------------------------------------------------------------------------------------------------------------------------------------------------------------------------------------------------------------------------------------------------------------------------------------------------------------------------------------------------------------------------------------------------------------------------------------------------------------------------------------------------------|
|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사의 설립 준비) ① 이 법에 따라 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준비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⑥ 준비위원회는 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p> |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시행 전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관 작성, 설립등기, 사무인계 등 공사의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논의 과정 등 진행경과에 따른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특정하기보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468 |